

서울고등법원  
제 12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4 나 58797 손해 배상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세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후지코시(不二越)  
                              일본국 도야마시 후지코시 혼마치 1 정목 1 번 1 호  
                              대표취체역(代表取締役) 혼마 히로오(本間博夫)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선고  
                              20137 가합 11596 판결  
변론종결                2018.12.21.  
판결선고                2019.1.18.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X 30, X 31, X 32, X 33, X 34, X 35, X 36, X 37, X 38, X 39 의 수계에 따라 제 1 심판결 중 망 X 4, X 12, X 13 에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대하여 2014.8.28.부터 2014.10.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청구금액에 대하여 원고 X 30, X 31, X 32, X 33, X 34, X 35, X 36, X 37, X 38, X 39 에대하여는 2014.8.28.부터 2014.10.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X 30, X 31, X 32, X 33, X 34, X 35,

X36, X37, X38, X39 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 2. 항소취지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X1, X2, X3, X5, X6, X7, X8, X9, X10, X11 과 망 X4, X12, X13, A, B, C, D는 1922 년 무렵부터 1932 년 무렵까지 사이에 한반도에서 출생한 한국인들이다(이하 이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

2) 피고는 1928 년 무렵 일본 도야마시에서 설립되어 금속 열처리, 공업용 재료 생산 및 가공업 등을 운영하던 회사(당시 회사명은 '후지코시 강재공업 주식회사'였다)로, 1944.1.18. 무렵 일본의 군수회사로 지정되어 1944 년 무렵부터 1945 년 무렵까지 군수품인 축받이, 특수강 등을 생산하였다.

##### 나.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 강제동원 등

1) 일본은 1910. 8 22. 대한제국과 한일병합조약<sup>1</sup>을 체결한 후 한반도를 지배하였다. 일본은 1931 년 만주사변, 1937 년 중일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점차 전시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1941 년에는 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다.

2) 일본은 이러한 전쟁으로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8. 4. 1. '국가총동원법'을, 1939. 7. 8. 국민정용령을 제정, 공포하고, 1942 년에는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과 '조선인 내지이주 알선요강'을 제정하여 한반도에서 관 알선 형식의 노무동원 계획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1944. 8. 8. 각의에서 '반도인 노무자 이입에 관한 건'을 결의함으로써 특수기능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정용을 실시하였다.

3) 일본은 1943.9.13. '여자근로동원 촉진에 관한 건'을 결의하고, 1944. 3.18.'여자정신대제도 강화방책요강'을 결의함으로써 국민등록자인 여자를 여자정신대로 조직하여 필요한 업무에 협력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1944. 6.21. 각의에서 '여자정신대원 인수촉 조치요강'을 결의하고, 같은 해 8. 23. '여자정신근로령'을 공포하여 이를 한반도에서도 동시에 시행하였다. 위 '여자정신대제도 강화방책요강' 및 '여자정신근로령'에는 "특히 지원하는 자는 정신대원으로 할 것을 막지

<sup>1</sup>발효일은 1910. 8. 29. 이다.

않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등록자가 아닌 사람도 여자근로정신대원이 될 수 있었고, 한반도에서는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근로정신대원 모집이 이루어졌다. 근로정신대원 모집은 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신문광고, 기사를 통한 모집, 학교나 단체를 통한 모집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국민학교 담임교사나 학교장이 그 학생이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요하거나 가정방문을 하여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집된 근로정신대원은 피고를 비롯한 미쓰비시공업 주식-회사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도토구 공장, 도쿄 마사방적 주식회사 누마즈 공장 등의 군수 공장에 동원되었다.

#### 다.망 A, B, C, X 4, X12, X13 과 원고 X1, X2, X3, X5, X6, X7, X8, X9, X10, X11 의 근로정신대 지원

1) 원고 X1 은 1929. 6. 22. 여수시에서 출생하였고, ※山※※으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위 원고는 1945 년 3 월 무렵 여수서국민학교 6 학년에 재학하던 중(당시 15 세) 담임교사로부터 '근로정신대에 가면 돈을 벌 수 있고, 일이 끝난 야간에는 학교에도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위 원고는 그 무렵 군청직원으로부터 근로정신대에 참가하도록 권유를 받으면서 '근로정신대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 안전한 곳이니 염려할 것 없다. 일 내용은 비행기의 도장이나 청소와 같은 간단한 작업이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위 원고는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여 1945 년 3 월 무렵 한반도를 떠나 1945 년 10 월 무렵 귀국할 때까지 피고의 도야마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선반을 사용하여 철을 깎는 작업 등을 하였다.

2) 원고 X2 는 1931. 8. 2. 순천시에서 출생하였고, ※光※子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위 원고는 1944 년 12 월 무렵 국민학교 6 학년에 재학하던 중(당시 13 세) 일본인여교사로부터 '일본에 가면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갈 수도 있으며, 이미 근로정신대로 가 있는 언니를 만나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였다. 위 원고의 조부모는 원고가 근로정신대에 지원한 것을 알고서 가지 못하게 말렸으나, 읍사무소에서 사람이 와 원고를 데려갔다. 위 원고는 1945 년 3 월 무렵 한반도를 떠나 1945 년 10 월 무렵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선반을 사용하여 철을 깎아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작업 등을 하였다.

3) 원고 X3 은 1931. 10. 1. 나주시에서 출생하였고, ※本※子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위 원고는 1945 년 2 월 무렵 대정국민학교 6 학년에 재학하던 중(당시 13 세) 담임교사와 일본에서 온 남성으로부터 '일본에 가서 일을 하면 여학교에 진학하여 대학교까지 갈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였다. 위 원고의 부모는 원고가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위 원고에게 근로정신대 지원을 권유한 일본인 남성은 원고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를 대신 데리고 간다고 하였다. 이에 위 원고는 부모의 승낙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의 인감을 무단으로 가져와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였다. 위 원고는 1945 년 3 월 무렵 한반도를 떠나 1945 년 10 월 무렵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선반을 사용하여 철을 깎는 작업 등을 하였다.

4) 망 X4 는 1932. 3. 22. 인천시에서 출생하였고, ※本※※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위 망인은 1945 년 1 월 무렵 인천 용화국민학교 5 학년에 재학하던 중(당시 12 세) 다른 여학생 몇 명과 함께 불려가 한국인 여교사로부터 ‘일본에 일하러 가라’는 말을 들었다. 위 교사는 여학생들이 아무도 이에 응하지 않자 제비를 뽑게 하여 위 망인을 포함하여 제비를 뽑은 여학생들에게 일본에 갈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위 망인의 부모가 반대하며 학교에 항의하였지만 학교는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위 망인은 1945 년 3 월 무렵 한반도를 떠나 1945 년 10 월 무렵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선반을 사용하여 철을 깎는 작업 등을 하였다.

5) 원고 X5 는 1931. 4. 1. 경주시에서 출생하였고 ※川※子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위 원고는 1944 년 무렵 국민학교에 재학하던 중(당시 13 세) 담임교사로부터 ‘피고 공장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고 꽃꽂이도 가르쳐 준다’는 말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였다. 위 원고는 1944 년 5 월 무렵 한반도를 떠나 1945 년 7 월 무렵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선반을 사용하여 금속 부품을 제조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6) 원고 X6 은 1930. 8. 23. 마산시에서 출생하였고, ※本※子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위 원고는 1944 년 무렵 성호국민학교 6 학년에 재학하던 중(당시 13 세) 학교 교육관에서 남녀 약 200 명이 모여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여성들이 꽃꽂이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게 되었다. 위 원고는 이후 일본인 담임교사와 학교장 및 피고의 남성직원 2 명으로부터 ‘피고 공장에 가면 여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 꽃꽂이를 배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위 원고는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고자 하였고, 학교장은 이를 반대하는 부모에게 ‘안전하게 데려가서 안전하게 데리고 올 테니 안심하고 맡겨 달라’고 말하며 설득하였다. 위 원고는 1944 년 6 월 무렵 한반도를 떠나 1945 년 7 월 무렵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선반을 사용하여 철봉에 구멍을 뚫어서 절단하여 비행기 배어링을 제조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7) 원고 X7 은 1931. 11. 20. 순천시에서 출생하였고, ※松※※으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위 원고는 1945년 무렵 주암면 국민학교를 졸업하기 직전(당시 13세) 일본인 담임교사로부터 '졸업 후에는 이 사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라'는 명령조의 말을 듣고 거절할 수 없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였다. 위 원고는 1945년 3월 무렵 한반도를 떠나 1945년 가을 무렵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선반을 사용하여 배와 비행기의 부품을 제조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8) 원고 X8은 1932. 1. 10.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村※※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위 원고는 1944년 무렵 장충국민학교 고등과 1학년에 재학하던 중(당시 12세) 한국인 담임교사와 학교장으로부터 '일본에 갔다가 귀국하면 고등과를 졸업한 것과 같은 대우를 해서 상급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단추를 붙이는 간단한 작업만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 시나 꽃꽂이도 가르쳐 준다'는 말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였다. 위 원고의 부모는 위 원고가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학교장은 근로정신대로 갈 것을 강하게 권유하였다. 위 원고는 1944년 7월 무렵 한반도를 떠나 1945년 7월 무렵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비행기 부품을 깎는 작업 등을 하였다.

9) 원고 X9는 1932. 1. 5. 군산시에서 출생하였고, ※田※子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위 원고는 1944년 9월 무렵 군산 공립 소학 심상소학교 고등과 1학년에 재학하던 중(당시 12세) 일본인 교사로부터 '근로정신대에 가면 돈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 꽃꽂이도 배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위 원고는 같은 또래의 여학생들이 맛있는 식사를 먹고, 꽃꽂이 등을 배우고,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본 다음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위 원고의 부모는 위 원고가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학교장은 이미 지원서류에 서명하였으므로 가야 한다고 하였다. 위 원고는 1945년 2월 무렵 한반도를 떠나 1945년 10월 무렵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베어링의 바퀴 안쪽을 사포로 가는 작업 등을 하였다.

10) 원고 X10은 1930. 5. 14. 마산시에서 출생하였고, ※田※子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위 원고가 송오국민학교 6학년에 재학하던 중(당시 13세) 1944년 2월 무렵 피고의 직원 2명이 6학년 여학생들을 강당에 모이게 한 뒤 여성이 선반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꽃꽂이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피고 공장에 가면 돈을 벌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기술도 있다. 꽃꽂이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하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위 원고는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였고, 1944년 4월 무렵 한반도를 떠나 1945년 7월 무렵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베어링의 내륜과 외륜을 맞추는 작업 등을 하였다.

11) 원고 X11 은 1931. 2. 2. 전주시에서 출생하였고 ※山※※으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위 원고는 1944 년 12 월 무렵 해성 심상소학교 6 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는데(당시 13 세), 피고의 남성 직원 2 명이 학교장과 함께 와서 ‘피고 공장에 가면 돈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 식사를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일본에 가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일은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것으로 간단한 작업이다’는 말을하며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도록 권유하였고, 이후 담임교사도 근로정신대에 지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위 원고는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였고, 1945 년 2 월 무렵 한반도를 떠나 1945 년 10 월 무렵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기계로 베어링을 연마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12) 망 X12(※※※에서 개명하였다)는 1930. 4. 23. 진주시에서 출생하였고, ※唐※※ (개명전:※木※※) 으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위 망인은 1944 년 무렵 길야국민학교 5 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는데(당시 13 세), 여성 일본인 담임교사는 수업시간 중 여학생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 주며 ‘일본에 가면 공부를 하여 중학교, 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 공장 설비와 대우가 좋으며 꽃꽂이, 춤, 재봉틀 교육 등도 해준다. 어차피 모두 가게 되어 있으니 먼저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며 근로정신대에 지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위 망인은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였고, 1944 년 6 월 무렵 한반도를 떠나 1945 년 7 월 무렵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타렛이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철봉을 자르는 작업 등을 하였다.

13) 망 X13 은 1926. 3. 8.<sup>2</sup> 출생하였고, ※川※※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한국인 구청장은 1944 년 6 월 무렵(당시 원고는 18 세) 위 망인에게 일본 여학생이 일을 하거나 꽃꽂이를 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일본에 가면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 꽃꽂이와 재봉틀을 가르쳐 준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위 망인은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여 1944 년 6 월 무렵 한반도를 떠나 1945 년 7 월 무렵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선반을 사용하여 철봉에 구멍을 뚫어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작업 등을 하였다.

14) 망 A는 1931. 12. 5. 대구시에서 출생하였고, ※井※※으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위 망인은 대구달성국민학교를 졸업한 1944 년 3 월 무렵(당시 12 세) 일본인 담임교사와 남성 2 명으로부터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중학교 공부를 가르쳐 주고, 꽃꽂이나 재봉 등 여성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은 전부 가르쳐 준다. 조선 여성은 모두 가게 되니까 어차피

<sup>2</sup>위 망인의 후생연금보험기록에 기재된 생년월일은 1926. 2. 3. 이나 이는 오기로 판단된다.

갈 거면 빨리 가는 편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위 망인은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여 1944년 3월 무렵 한반도를 떠나 1945년 7월 무렵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선반을 사용하여 드릴을 제조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15) 망B는 1932. 3. 13. 충북 청주군에서 출생하였고, 1945년 무렵 교현소학교 6학년에 재학하던 중(당시 12세) 일본인 담임교사로부터 ‘피고 공장에 일을 하러 가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위 망인의 부모는 반대하였으나, 담임교사가 3번이나 위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권유하였다. 이에 위 망인은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여 1945년 3월 무렵 한반도를 떠나 1945년 10월 무렵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사포로 철을 갈아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작업 등을 하였다.

16) 망C는 1930. 5. 15. 목포시 에서 출생하였고, ※田※※으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위 망인은 1945년 무렵 서석국민학교에 재학 중(당시 14세)이었는데, 일본인 교사가 위 망인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공부를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며 근로정신대에 지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위 망인은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여 1945년 1월 무렵 한반도를 떠나 1945년 10월 무렵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선반을 사용하여 철봉을 만드는 작업 등을 하였다.

#### 라. 망D의 강제징용

1) 망D는 1922. 1. 3. 평안남도에서 출생하였고, ※本※※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2) 위 망인은 1944년 가을 무렵 면장으로부터 정용영서(徵用令書)를 받고, 정용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책임자라는 일본인의 통솔하에 이 사건 공장으로 갔다. 위 망인은 1945년 11월 무렵 한반도로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식당 청소, 짐 운반, 조리보조 등의 업무를 하였다.

#### 마. 원고 등의 일본에서의 근로 및 생활환경 등

1) 원고 등은 대부분 이 사건 공장에 도착한 이후 1개월에서 2개월의 군대식 훈련을 받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10-12시간 이 사건 공장 내 각자의 작업장에서 위 와 같은 노동을 하여야 했고, 하루 작업을 마치면 피고가 마련한 기숙사로 돌아가 숙식을 해결하였다. 원고 등이 담당한 일은 주로 선반과 같은 큰 기계를 이용하여 철을 깎거나 자르는 위험한 작업이었고(당시 어린 나이였던 원고 등은 키가 작아 발판에 올라서서 기계를 조작하여야 했다),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원고 등은 부상을 당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 닳기도

전에 작업에 다시 투입되었고, 하루에 할당된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2) 원고 등은 좁은 기숙사 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였는데 (1 명당 다다미 1 장 정도의 공간만이 주어졌다), 기숙사에는 난방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침구도 부족하거나 부실하여 겨울에는 추위에 시달리고 동상에 걸리기도 했다. 이 사건 공장에는 식당과 매점이 있었으나, 1945 년 무렵에는 물자가 부족해 식량 사정도 나빠졌다. 종전(終戰)이 가까워지자 원고 등 이 사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로 삼각빵이 배급되었으므로, 그중에는 공복을 물로 견디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1944 년과 1945 년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장에서 일하는 기간 내내 배고픔을 감내해야만 했다. 기숙사 주위에는 철조망이 있었고 입구에는 감시원이 있었으며, 자유로운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한반도에 있는 가족들과 서신을 교환하는 경우 피고의 직원들이 그 내용을 검열하였다.

3) 1945 년 무렵부터는 도야마시에 대한 공습이 심해져 한밤중에 대피하는 일도 있어 원고 등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4)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망D 외 나머지 원고 등은 근로정신대 지원 당시 들었던 이야기와 달리 학교 교육, 꽃꽂이나 재봉틀 교육 등을 받지 못하였다.

#### 바. 태평양전쟁 종전과 원고 등의 귀국 후 상황

1) 피고는 1945 년 3 월 무렵 일본 군수성의 명령에 따라 평양 근처 사리원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같은 해 7 월 무렵 한반도에서 온 근로정신대원을 사리원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에 일부 원고 등은 1945 년 7 월 무렵 자택대기 지시를 받고 한반도로 귀국하였다. 1945. 8. 15.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태평양전쟁이 끝남에 따라 일본에 남아있던 나머지 원고 등도 1945 년 10 월 무렵 한반도로 귀국하였다.

2) 한편 일본은 1938 년 무렵부터 1945 년 무렵까지 한반도 여성을 군위안부로 모집하면서 여자정신대, 위문단, 봉사대 등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군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의 구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정신대도 군위안부로 오인되기도 하였다. 이에 근로정신대원으로 지원하였던 원고 등은 귀국 후 최근까지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근로정신대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고, 일부원고 등은 근로정신대원으로 지원한 것을 알게 된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이혼을



당하기도 하였다.

#### 사.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의 상황

##### 1)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체결

가)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연합국과 일본은 1951. 9. 8.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조약 제 4 조 (a)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위 조약 제 2 조에 규정된 지역에 존재하는 일본 및 그 국민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을 상대로 한 청구권과 일본에 존재하는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 소유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의 일본 및 일본 국민들에 대한 청구권의 처리는 일본과 위 지역의 통치 당국간의 특별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 2)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약과 부속협정의 체결

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1965. 6. 22.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권협정은 제 1 조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에 10 년간에 걸쳐 3 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 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 "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 2 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I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a)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 일까지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 (b)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I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1)은 위 제 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a)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 (e) 동조 3.에 의하여 취하여질 조치는 동조 1.에서 말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질 각국의 국내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라) 위 합의의사록에 적시된 대일청구 8개 요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5) 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반제 청구
  - (다) 피징용한국인 미수금
  - (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 (바) 한국인의 대 일본인 또는 법인청구
- (6) 한국인(자연인, 법인)의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에 관한 항목

3) 청구권협정에 따른 후속조치

가) 청구권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은 1965. 12. 17.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 2 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4 호, 이하 '재산권조치법'이라한다)을 제정·시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일본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으로 협정 제 2 조의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1965. 6.22. 소멸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나) 한편 대한민국은 1966. 2. 19.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71. 1. 19.에는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1974. 12. 21. '대일 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을 각 제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위 각 법률에 따라 신고받은 국민의 대일청구권 총 109,540 건 중 총 83,519 건에 대하여 총 9,187,693,000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각 법률은 1982. 12. 31. 모두 폐지되었다. 그런데 위 법률들은 강제징용피해자 중 1945. 8. 15.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보상만을 규정하였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현재까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아. 민관공동위원회의 개최

1)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징용자 일부가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4. 2. 13.선고 2002 구합 33943 판결)의 결과에 따라 2005 년 1 월 무렵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일부분서를 공개하였다.

2) 그 후 구성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라고 한다)'에서는 2005. 8. 26.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4 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동포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자. 일본에서의 소송경과

1) 원고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일하였던 근로정신대원 중 일부는 2003년 4월 무렵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에 피고와 일본을 상대로, 근로정신대원들과 정용공에 대하여 강제연행을 통한 강제동원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피고와 일본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국제법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도야마지방재판소는 2007. 9. 19. 위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일본 나고야고등재판소 가나자와지부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3. 8.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원고들이 다시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0. 24. 상고를 불수리, 기각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일본에서의 소송을 '이 사건 일본소송'이라 하고, 그 판결들을 '이 사건 일본판결'이라 한다).

#### 차. 일부 원고 등의 사망

1) 망 X4는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18. 16. 1. 사망하였다. 위 망인의 딸 X30 과 2015. 7. 7. 사망한 망인의 아들K의 딸 X31 이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망 X12 는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18. 1. 9. 사망하였다. 위 망인의 상속인인 자녀 X32, X33, X34 이 위 망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3) 망 X13 은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18. 2. 20. 사망하였다. 위망인의 상속인인 자녀 X35, 36, X37, X38, X39 이 위 망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4) 망 A는 2012. 1. 1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 X14 가 있었다.

5) 망 B는 이 사건 일본소송이 제 1 심에 계속 중이던 2004. 12. 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원고 X15 와 자녀들인 원고 X16, X17, X19 및 망 X18 이 있었다. 한편 망 X18 이 이 사건 소송이 제 1 심에 계속 중이던 2013. 5. 19.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배우자 X28 과 아들 X29 가 망 X18 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6) 망 C는 이 사건 일본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2009. 4. 1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원고 X20, X21, X22, X23, X24, X25, X26 이 있었다.

7) 망 D는 이 사건 일본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2008. 11. 2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E와 자녀들인 F, G, H, I, J 및 원고 X27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5, 31, 32, 55 내지 61, 63 내지 68, 80, 81, 82 호증, 을 제 2, 24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원고 X6, X11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일본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피고가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 내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고,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일본 정부와 함께 원고 등을 불법으로 데려가 노무동원을 한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이다.

2)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민법에 근거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다.

3)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의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인 원고 등 중 생존자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의 결정

원고 등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준거법은 법정지인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규범(이하 '저촉규범'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그 법률관계가 발생한 시점은 구 섭외사법(1962. 1. 15. 법률 제 996 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된 1962. 1. 15.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걸쳐 있다. 그중 1962. 1. 15.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은 대한민국 제헌헌법 부칙 제 100 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질서에 편입된 일본의 '법례(法例)'(1898. 6. 21. 법률 제 10 호)이다. 원고 등의 청구권이 성립한 시점에 적용되는 위 '법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력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에 의한다(제 11 조).이 사건 불법행위지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명백하게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아가 제정 민법이 시행된 1960. 1. 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적용될 대한민국법은 제정 민법 부칙 제 2 조 본문에 따라 '구 민법(의용 민법)'이 아닌 '현행 민법'이다.

#### 나)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 등에 대한 피고의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 등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군수사업체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였고, 피고는 일본 정부의 인력동원 정책에 편승하여 인력을 확충하였다.

(2) 당시 피고와 일본 정부는 근로정신대원으로 지원한 여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꽃꽂이, 붓글씨, 재봉틀 실습 등의 특기교육을 지원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와 피고는 망 박도일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 등 나이 어린 위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연장자들을 동원하거나 피고의 직원들을 파견하여 기망, 회유, 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위 원고 등을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하였고, 정용영서를 받은 망 박도일을 일본으로

데리고 갔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박도일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은 나이 어린 여성이었음에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등은 열악한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면서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는 등 자유를 억압받았다.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일본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1) 주장 요지

이 사건 일본판결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 217 조에서 정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한민국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일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 다 22549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 다 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強占)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세계평화주의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의 계승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일본판결은 한반도를 일본 영토의 구성 부분으로 보고 위 일본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을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결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일본법을 적용하였다.

(다) 이 사건 일본사건 중 항소심 법원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안전배려의무위반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하였다.

그러나 위 항소심 법원은 일본의 한반도 및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하에 일제강점기의 국가총동원법, 국민정용령, 여자정신근로령이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당시 시행되던 메이지헌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등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라) 일본이 일으킨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국제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침략전쟁이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국제사회가 인식을

함께하고 있고, 이런 침략전쟁 및 이를 수행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세계 문명국가들의 공통적인 가치이다.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일본의 한반도 및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이유가 담긴 이 사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나)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 등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은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권협정의 체결로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 33 내지 49 호증, 을 제 3 내지 23, 49 내지 52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 다 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나)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과와 그 전후 사정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4 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권협정 제 1 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 2 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라)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도,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0 년 이상이 지난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지났다.

(2) 판단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준거법 역시 대한민국법이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현행 민법에 소멸시효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법이 준거법이라는 전제에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시효소멸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원고 등이 최종적으로 귀국한 1945 년 10 월 무렵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1945 년 10 월 무렵 및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60. 1. 1로부터 10 년이 지난 후인 2013. 2. 14. 제기되기는 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그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1965. 6. 22.까지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었다.

② 1965 년 한일간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일반적이었다.

③ 일본에서는 청구권협정의 후속조치로 재산권조치법을 제정하여 원고등의 청구권을 일본 국내적으로 소멸시키는 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 일본소송에서도 청구권협정과 재산권조치법이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로 명시되었다.

④ 그런데 원고 등과 같이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 개인청구권,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서서히 부각되었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민관공동위원회는 2005. 8. 26.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기를 하였다.

그러나 민관공동위원회도 위와 같은 견해를 표명하면서 강제동원 내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개개인의 일본 군수업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그 후에도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에서 무상으로 받은 3 억 달러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따라서 민관공동위원회의 위 견해 표명만으로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⑥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 2009 다 22549 , 2009 다 68620 판결을 통해 청구권협정으로 원고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하기를 하였다.

그러나 위 각 판결은 환송판결로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즉시 확정되지도 않았고, 원고들이 위 판결의 당사자도 아니었다. 원고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과거 일본 정부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재까지도 청구권협정 관련 정보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이 2018. 10. 30. 에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과 2009다68620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원고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시효정지에 준하는 기간보다 연장하여 3년으로 인정함이 옳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위 대법원 2009다22549, 2009다68620 판결 선고일인 2012. 5. 24.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옳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2003년 4월 무렵 일본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일본소송을 제기하는 하였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받아들여졌던 종전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고 등이 이 사건 일본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에게 그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⑧ 이 사건 불법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편승한 반인도적인 행위임에도, 피고는 무려 7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책임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1) 위자료의 액수

가) 앞서 본 가해행위의 불법성의 정도와 피고의 가담 정도, 원고 등의 나이 및 강제노동에 종사한 기간, 노동의 강도, 근로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임금 미지급 등 피해의 정도와 미회복 상황, 원고 등이 귀국 후에 겪은 사회·경제적 어려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나) 이 사건 제 1 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 X1, X2, X3, X7, X9, X11, 망 X4, B, C, D에 대한 위자료는 각 80,000,000 원, 원고 X5, X6, X8, X10, 망 X12, X13, A에 대한 위자료는 각 100,000,000 원으로 정한다.

#### 2) 상속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원고 등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들이 망인들을 상속하였고, 위 원고들의 개별 상속분과 위 원고들이 상속한 위자료의 액수는 별지 원고별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상속분란과 인용금액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 3)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 종료일인 1945년 무렵부터 이 사건 제 1 심 변론종결일인 2014. 8. 28. 까지 68년 이상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다. 앞서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변동이 생긴 사정까지 참작하여 이 사건 제 1 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 1 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부 원고들이 위 각 위자료 상당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 1 심 변론종결일 전일인 2014. 8. 27.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 4) 최종 인용금액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 1 심 변론종결일인 2014. 8. 28.부터 이 사건 제 1 심판결 선고일인 2014.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X30, X31, X32, X33, X34, X35, X36, X37, X38, X39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성근  
판사 김구년  
판사 박효선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순번	원고	피해자	청구금액 (원)	피해자본인 의 위자료	상속분	인용금액 (원)		
1	X1	본인	100,000,000	80,000,000		80,000,000		
2	X2	본인	100,000,000	80,000,000		80,000,000		
3	X3	본인	100,000,000	80,000,000		80,000,000		
4	망X4의 소송수계인	X30	망X4	100,000,000	80,000,000	1/2	40,000,000	
		X31				1/2	40,000,000	
5	X5	본인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6	X6	본인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7	X7	본인	100,000,000	80,000,000		80,000,000		
8	X8	본인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9	X9	본인	100,000,000	80,000,000		80,000,000		
10	X10	본인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1	X11	본인	100,000,000	80,000,000		80,000,000		
12	망X12의 소송수계인	X32	망X12	100000000	100000000	1/3	33,333,333	
		X33				1/3	33,333,333	
		X34				1/3	33,333,333	
13	망X13의 소송수계 인	X35	망X13	100000000	100000000	1/5	20,000,000	
		X36				1/5	20,000,000	
		X37				1/5	20,000,000	
		X38				1/5	20,000,000	
		X39				1/5	20,000,000	
14	X14	망A	100,000,000	100,000,000	1	100,000,000		
15	X15	망B	27,272,727	80,000,000	3/11	21,818,181		
16	X16		18,181,818		2/11	14,545,454		
17	X17		18,181,818		2/11	14,545,454		
18	망X18의 소송수계		X28		10,090,089	6/55	8,727,272	
			X29		7,272,727	4/55	5,818,181	
19	X19				18,181,818		2/11	14,545,454
20	X20		망C		14,285,714	80,000,000	1/7	11,428,571
21	X21	14,285,714		1/7	11,428,571			
22	X22	14,285,714		1/7	11,428,571			
23	X23	14,285,714		1/7	11,428,571			
24	X24	14,285,714		1/7	11,428,571			
25	X25	14,285,714		1/7	11,428,571			
26	X26	14,285,714		1/7	11,428,571			
27	X27	망D	13,333,333	80,000,000	2/15	10,666,666		

[→ HOME](#)